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비대면조사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을 통계청 정원으로 이체하며, 가계통계 분석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지역통계총괄과를 폐지하고 통계청 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며, 경제통계국 1개 정책관 및 사회통계국 1개 과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인 국제통계팀을 폐지하고 비대면조사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통계청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6.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관리

7. 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8. 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신남방 및 신북방 통계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제2조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제5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현장조사**”를 각각 “**통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통계조사**”를 각각 “**국가통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비대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대면조사에 관한 조정 및 협력
2. 비대면조사 실시 및 내용검토·분석에 관한 사항
3. 비대면조사 표본관리 및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대면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 활동(홍보, 협의체 등)
7.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 분석·가공 자료 작성·보급
8.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개선·개발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 활동(홍보, 협의체 등)
7.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 분석·가공 자료 작성·보급
8.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개선·개발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 활동(홍보, 협의체 등)
7.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 분석·가공 자료 작성·보급
8.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개선·개발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업·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 활동(홍보, 협의체 등)
7. 농어업·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 분석·가공 자료 작성·보급
8. 농어업·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개선·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단서 중 “4명”을 “3명”으로, “2명”을 “1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전주사무소, 군산사무소, 남원사무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주사무소	전라북도 전 주 시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사무소	군 산 시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남원사무소	남 원 시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별표 3 중 총계 “674”를 “684”로 하고, 일반직 계 “673”을 “683”으로 하

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을 “3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5”를 “147”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9”를 “201”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1”을 “165”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6”을 “79”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78”을 “687”로 하고, 일반직 계 “677”을 “686”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을 “3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7”을 “149”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8”을 “20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2”를 “166”으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6”을 “79”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39”를 각각 “1,429”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1”을 “89”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59”를 “258”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10”을 “406”으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506”을 “50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9”를 “12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40”을 각각 “1,43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1”을 “89”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72”를 “271”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17”을 “413”으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491”을 “488”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5”를 “116”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766호 및 기획재정부령 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을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2년 2월 2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비대면조사팀은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비대면조사팀장이 조사관리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비대면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보좌한다.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경제통계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3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통계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⑥ 국제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u> 1. <u>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관리</u> 2. <u>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u> 3. <u>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u> 4. <u>신남방 및 신북방 통계에 관한 사항</u>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관리</u> 7. <u>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u> 8. <u>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u> 9. <u>신남방 및 신북방 통계에 관한 사항</u> <u><삭제></u>
제2조(통계정책국) ①·② (생략)	제2조(통계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9. (생략) <u><신설></u> ④ (생략) ⑤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⑥·⑦ (생략)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④ (생략) ⑤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1. ~ 7. (현행과 같음) 8. <u>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9. <u>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u> 11. (현행 제9호와 같음) 10. <u>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u>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⑥·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6. <u>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	--

5. (생략) ⑥ ~ ⑬ (생략) 제5조(조사관리국) ①·② (생략)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삭제 4. (생략) 5. <u>현장조사</u>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u>현장조사</u>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u>현장조사</u>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u>현장조사</u>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u>현장조사</u>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 12. (생략) ④ <u>지역통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 <u>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3. <u>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u>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관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4. (현행과 같음) 5. <u>통계조사</u> ----- ----- 6. <u>통계조사</u> ----- ----- 7. <u>통계조사</u> ----- ----- 8. <u>통계조사</u> ----- ----- 9. <u>통계조사</u>----- - 10. ~ 12. (현행과 같음) <삭제>
---	---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⑤ (생략)

⑥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⑦ 통계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3.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4. 대행 통계조사의 현장조사관리

5. 대행 통계조사의 조사결과의 제공

<신설>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
-----.

1. 국가통계-----
--

2. 국가통계-----
--

3. ~ 5. (현행과 같음)

⑥ -----
-----.

1. 국가통계-----

2. 국가통계-----

3. 국가통계-----

4. --- 국가통계-----
--

5. --- 국가통계-----
--

⑦ 비대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

제8조(지방통계청) ① ~ ⑤ (생략)

⑥ 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 (생략)

⑦ 사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을 분장한다.

1. 비대면조사에 관한 조정 및 협력

2. 비대면조사 실시 및 내용검토·분석에 관한 사항

3. 비대면조사 표본관리 및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대면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지방통계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6.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 활동(홍보, 협의체 등)

7.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 분석·가공 자료 작성·보급

8.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개선·개발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⑦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⑧ 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⑨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 활동(홍보, 협의체 등)

7.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 구역 분석·가공 자료 작성·보급

8.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 방법 개선·개발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⑧ -----
-----.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 활동(홍보, 협의체 등)

7.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 분석·가공 자료 작성·보급

8.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 방법 개선·개발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⑨ -----
-----.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서비스업 관련 통계

<신 설>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계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 2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9. (현행 제6호와 같음)

3명

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제15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u>가계통계 분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둔다.</u>	----- ----- ----- ----- ----- 1명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계	.		.		.				
			<u>674</u>		<u>684</u>			+10	
일반직 계	.		.		.				
	.		.		.				
			<u>673</u>		<u>683</u>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		.		.				
			<u>31</u>		<u>30</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		.		.				
	.		.		.				
			<u>145</u>		<u>147</u>			+2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		.		.				
			<u>199</u>		<u>201</u>			+2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	<u>161</u> .	<u>165</u> .	+4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 .	<u>76</u> . .	<u>79</u> . .	+3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8	687	+9
일반직 계	677	686	+9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	30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7	149	+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8	200	+2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	<u>162</u> ·	<u>166</u> ·	+4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u>76</u>	<u>79</u>	+3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 ·	<u>4</u> · ·	<u>3</u> · ·	-1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39</u>	<u>1,429</u>	-10
일반직 계	<u>1,439</u>	<u>1,429</u>	-10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91</u>	<u>89</u>	-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u>259</u>	<u>258</u>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410</u>	<u>406</u>	-4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u>506</u>	<u>503</u>	-3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u>119</u>	<u>12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6</u>	<u>15</u>	-1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40</u>	<u>1,430</u>	-10
일반직 계	<u>1,440</u>	<u>1,430</u>	-10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91</u>	<u>89</u>	-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u>272</u>	<u>271</u>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417</u>	<u>413</u>	-4

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u>491</u>	<u>488</u>	-3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u>115</u>	<u>11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6</u>	<u>15</u>	-1